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
----------	-----

제출년월일 : 2001. 11. 13.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지방세고지서의 통·리·반장 직접교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고지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 및 우편료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통·리·반장의 서류송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 1매당 500원에서 서류 1매당 800원으로 인상 조정함.(안 제15조)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500원”을 “8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 940-4220
	시 세 담 당	이 용 석 ☎ 940-4238
	담 당 자	정 재 현 ☎ 940-423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서류의 송달방법)	제15조(서류의 송달방법)
①(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부 교부근거에 의하여 서류1매당 <u>500원</u> 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 <u>800원</u> ----- -----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 제안이유

- 지방세고지서의 통·리·반장 직접교부세 시행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고지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 및 우편료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통·리·반장의 서류 송달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던 수당을 서류 1매당 500원에서 서류 1매당 800원으로 인상 조정함. (안 제15조)

□ 검토의견

- 지방세고지서의 통·리·반장 직접교부세 시행과 관련하여 등기우편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직접교부수수료를 현실화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통·리·반장의 사기진작을 통한 고지서 교부의 효율성 제고 및 우편료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지난 제45회 임시회의시 동 사항과 관련하여 이재일 총무보사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하였는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중 일부 통·리에서 현행 직접교부 수수료가 낮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서 교부업무 대행을 기피하는 사례와, 우편송달시 건당 1,170원의 비싼 우편료에도 불구하고 수령인 부재시 송달이 안되어 반송율이 높고 반송때마다 건당 1,000원의 반송료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등 예산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등을 검토하여 볼 때 앞으로 고지서의 교부는 직접교부를 위주로 송달하되 그 동안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보완하면서 통·리·반장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직접교부 수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였는바, 동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통·리·반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균등할 주민세(3,300원)의 경우 고지서 직접교부에 따른 수수료 800원(주민세의 24.2%)을 지불해야 하므로 균등할 주민세 3,300원에 비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됨.

가. 경기도 31개 시·군별 고지서 송달현황

- 수원시외 12개시·군의 직접교부 수수료 : 500원

※ 평택시 : 미 지급

- 우편송달 : 의정부시외 14시군
- 직접교부 : 수원시외 10개시군
- 병 행 : 용인시외 4개시군